

기안용지

윤형재 B56

후
청
경

기안번호	법무 181	(전화번호 307)	전결규정	조항
시행일자	71. 12.	결재자	전결사항	
보조년한	영구	제1부서장	사장	
보조	기획관리관			
조기	법무과장			
관	법제계장			
경유	각안참조	발신		
제 목	서울특별시 구간 행정 구역 조절에 관한 규정중 개정 1. 현행 제1 단계의 구간 고속도로는 제 2 단계의 구간 - 마장포 까지 연장 되었으며 사직터널, 부암터널, 남산 1 호 터널 및 남산 2 호 터널등은 아직 관리권이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관할청의 지정 및 재조정의 필요로 법안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. 끝.			

청
서

관
인

발
인

0201-1-8A

190mm x 268mm 리상지 509/m²

1969. 11. 10. 송인

(서울특별시청 상설 직업보도원 인쇄)

0499

(공 호 한)

서울특별시공명제 호

서울특별시구간별정구역조절에 관한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1971 년 월 일

서울특별시장 양 덕 석

서울특별시구간별정구역조절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

서울특별시구간별정구역조절에 관한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표 2. 도로양중 순번 7 판을 다음과 같이 하고

순번	명칭	위 치	관할청	지정청	한 제
7	정제도로와 정제철교가고속도로	3.1 도로부터 정제도로 5 가까지	종로구, 중구	중 구	죽은건축설까지
		정제도로 5 가로부터 정제도로 6 가까지	' '	종로구	'
		정제도로 6 가로부터 제 2 정제교까지	동대문구, 성동구	동대문구	'
		제 2 정제교로부터 아사장교까지	' '	성동구	'

순번 8 판 다음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순번	명칭	위 치	관할청	지정청	한 제
9	사 리 별	서대문구교북동 16 번지로부터 종로구사리동 304 번지까지	서대문구, 종로구	종로구	죽은건축설까지
10	북 약 별	성북구정농동산 87 의 1 로부터 서대문구정농동산 6 의 2 까지	성북구, 서대문구	성북구	'
11	남산 1 로 별	중구성장동산 5 의 6 로부터 용산구한남동산 10 의 80 까지	중 구, 용산 구	중 구	'
13	남산 2 로 별	중구상암동 8 가산 7 의 22 로부터 용산구용산동 8 가 252 의 250 까지	중 구, 용산 구	중 구	'

부 칙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공공 시설이 구간행정구역의 경계에 걸쳐서 게재하는 때에 그 공공시설의 일체성을 감안하여 그 관할청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① 이 규정에서 공공시설이라 함은 하천, 구거, 도로, 교량, 공원등으로서 구간행정구역 조질의 대상이 되는 시설을 말한다.

② 이 규정에 의한 구간행정구역의 조질은 어떠한 의미에서든지 행정구역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3조(조질방법) 공공시설로서 구간행정구역의 경계에 게재하는 시설이 게재하는 때에 해당

과기 지질청이 관할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70년 6월 1일부터
시행한다.

이 규정은 1971년 4월 26일 부
칙 시행한다.

부 표

1. 학 권

순번	명 칭	위 치	관 할 형	지정명	한 제
1	한 장	용산구와영동포구의 경계	용산구, 영동포구	용산구	수면
2	마포장	마포구와영동포구의 경계	마포구, 영동포구	마포구	수면
3	제 2 한 고	마포구와영동포구의 경계	마포구, 영동포구	마포구	교방의 전부

2. 도 보

순번	명 칭	위 치	관 할 형	지정명	한 제
1	시정발경 장	태평로 1가로부터 제한문까지	종구, 서대문구	종구	죽은건축물 까지
2	제한문일	제한문부터태평로 2가 357까지	종구, 서대문구	종구	죽은건축물 까지
3	서대문일 구	서소문동 3번지부터 태평로 2가 332번지	종구, 서대문구	종구	죽은건축물 까지
4	종자동기 차갈다리	종자동 75번지부터 종자동 43번지까지	종구, 용산구	종구	죽은건축물 까지
5	종자동일	추월동 1번지부터 종자동 21번지까지	종구, 용산구	종구	죽은건축물 까지

6	급료 및 다리	급료 등 8 - 9 로부터 급료 등 다리 경우	제 1 분구 다리	다리 구	추진 실과지
	노고산 로마리	노고산 로마리 경우 합계 등 103 - 1 까지	다리 구		
7	정제 의정제	3.1 로부터 제 3 가까지	정제 구	정제 구	추진 실과지
	정제 구	정제 3 가로부터 정제 6 가까지	정제 구	정제 구	추진 실과지
		정제 6 가로부터 제 1 정제까지	정제 구	정제 구	추진 실과지
		제 1 정제로부터 제 2 정제까지	정제 구	정제 구	추진 실과지
8	삼 의	삼 등산 2 - 1 부터 삼 등산 25 - 1 까지	삼 구	삼 구	추진 실과지

7	정제 의정제	3.1 로부터 제 3 가까지	정제 구	정제 구	추진 실과지
	정제 구	정제 3 가로부터 정제 6 가까지	정제 구	정제 구	추진 실과지
		정제 6 가로부터 제 2 정제까지	정제 구	정제 구	추진 실과지
		제 2 정제로부터 마감까지	정제 구	정제 구	추진 실과지
의정					
9	사 의	사 등산구로부터 16 제 1 부터 정제구사 의 등 304 까지	사 구	사 구	추진 실과지
10	부 의	부 등산 87 의 1 로부터 제 1 분구 정제 등산 8 의 2 까지	부 구	부 구	추진 실과지
11	삼 의	삼 구의 등산 5 의 6 로로부터 등산구한 삼 등산 10 의 35 까지	삼 구	삼 구	추진 실과지
12	삼 의	삼 구의 등산 2 가산 7 의 22 로부터 등산구 삼 등산 2 가 282 의 289 까지	삼 구	삼 구	추진 실과지

계 정 이 유

1. 서울특별시 구강정밀구취 조전에 관한 규정을 3971.4.26자 순경 제 350호로 개정시행 하여 온바.
2. 형 제로와 형 제전 고 가 교수도포 가 71.8.15자로 제 2 형 제로 — 마장크 까지 연장신선 되었으며.
3. 사주 며남.복와 며남.남산 1.2.호 며남들은 아직 관미형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겠음.

(제 2 안)

수신 수신처참조 발신 시 장

제 목 준례 공포 용지

별첨과 같이 을 공포하였으므로 동지함.

공포년월일	공포번호	권 명	비 고
기년 12월 일	제 호	서울특별시 구인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규정중 개정	

첨 부: 준례 문 1 부 들.

수신처: 내외, - 4. 내외, - 10. 내외, - 9

(제 3 안)

수신 공포실장 발신 법무부장

제 목 준례 시보계제외

별첨과 같이 준령하 공포되어 동지하되 시보에 게재하
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공포년월일	공포번호	권 명	비 고
기년 12월 일	제 호	서울특별시 구인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규정중 개정	

첨 부: 준례 문 2 부 들.